의 안 번 호

1345

【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】

#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7. 5. 2.(화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5. 8.(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5. 16.(화)

#### 2. 제안이유

- 가.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징수·체납과 관련된 규정을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됨에 따라,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 규정(안 제3조)

4. 근거법규: 「지방세징수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되어 2017. 3. 2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
- **※**「지방세징수법」: [시행 2017. 3. 28] [법률 제14476호, 2016. 12. 27. 제정]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 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O 다만, 일부 경미한 정리(부칙)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.

## ○○특별·광역시 ○○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법령과의 관계) ○○특별·광역시 ○○구 구세(이하 "구세"라 한다) 의 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- ◇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체납액이 30만원이 아닌 경우
  - ◇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이 1천만원이 아닌 경우(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)
  - ◇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경우 제○○조(구세의 수납) 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지역"이란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를 말한다.
    -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"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"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(가산금을 제외한다)이 0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.
- 제3조(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"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"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#### ◇ 기타 안(타 조례 인용시)

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"란 「○○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 제00조제00호에 따른 성실납세 자를 말한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**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**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○○특·광역시 ○구 구세 기본 조례」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 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○○특·광역시 ○○구 구세 기본 조례」 규정 에 따른다.
  -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〇〇특·광역시 ○○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 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정장이 한 행위로 본 다.
- 제3조(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) ○○구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 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◇ 다른 조례에서 본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 변경된 조례의 조문이 개정되도록 조치(예시 참조)
  - ① ○○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0조제0항 중 "「지방세징수법」 제141조"를 "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8 조"로 한다.
  - ② ○○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0조 중"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8조와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05조 의2"를"「지방세징수법」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"로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○ ○특·광역시 ○○구 구세 기본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 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